

취·창업동아리운영규정

5-2-21

규정번호	5-2-21
제정일자	2024.1.24
최근개정	2026.5.18
개정차수	3차 개정
관리부서	취·창업팀 AI융합진로지원센터

[규정명칭 변경 2026.5.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재학생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2.6.)

제2조(등록 절차 및 승인) 취·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취·창업팀에 취·창업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창업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7.24., 2026.2.6.)

제3조(동아리 활동) 취·창업동아리 활동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6.2.6.)

1.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스터디 활동(개정 2026.2.6.)
2. 취·창업 관련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개정 2026.2.6.)
3. 기타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개정 2026.2.6.)

제4조(지도교수 역할) 취·창업동아리에는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6.2.6.)

1. 동아리 회원의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개정 2026.2.6.)
2. 동아리 운영계획 및 활동 점검
3. 동아리 관련 서류 작성 지도 및 검토

제5조(동아리 지원) 취·창업팀에서는 취·창업동아리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24., 2026.2.6.)

1. 취·창업동아리실(개정 2026.2.6.)
2. 취·창업동아리 활동비(개정 2026.2.6.)
3. 기타 취·창업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6.2.6.)

제6조(운영위원회) 취·창업동아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창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6.2.6.)

제7조(평가) 취·창업운영위원회는 취·창업동아리의 운영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계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우수 동아리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6.2.6.)

제8조(등록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취·창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창업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2.6.)

1. 동아리 활동비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동아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동아리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명지전문대학 규정 / 5-2-21 취·창업동아리운영규정

4. 기타 우리대학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우리대학 제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5조)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 제3조제1호·제2호·제3호, 제4조제1호, 제5조제1호·제2호·제3호, 제6조, 제7조, 제8조)

부 칙<규정명칭 변경>

이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